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96
----------	------

발의연월일 : 2020. 12. 15.

발 의 자 : 이상현·박 정·이해식
조승래·안민석·임오경
김상희·한병도·조응천
유동수·김영주·류호정
김병욱·신동근·도종환
유정주·이병훈 의원
(17인)

제안이유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며 산업적 가치도 더욱 상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수 담고 있음.

이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

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배급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게임내용정보, 게임사업, 온라인게임제공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 중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동호회가 단순 공개 목적의 창작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을 등급분류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 마.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바.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

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0조제1항).

사.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 이행 부담 경감 및 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아.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자.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게임법상 위법한 행위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선전 행위를 금지함(안 제6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차.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7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재미를 추구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
2. “게임내용정보”란 다음 각 목에 관한 게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가. 폭력성의 여부와 그 정도
 - 나. 선정성(煽情性)의 여부와 그 정도
 - 다. 사행성(射倖性) 모사의 여부와 그 정도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운영에 관한 사항
3. “게임산업”이란 게임 또는 게임상품(게임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제작·유통·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사업”이란 게임산업과 관련된 영리목적의 경제활동으로서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을 개발하거나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배급업”이란 게임을 수입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게임제공업”이란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제공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을 제공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온라인게임제공업”이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9호에 따른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게임시설제공업”이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 제27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 중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성인게임시설제공업 : 제27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게임사업자”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63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사업자로 본다.

13. “확률형 아이템”이란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기기
2.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2조제1호의 게임 중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4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게임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제4조(국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국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게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건전한 게임 문화정착과 게임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건전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게임사업자의 책무) ① 게임사업자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게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게임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8조(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① 정부는 게임문화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게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및 시행
2. 게임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방안의 마련·시행
3.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4.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제27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외의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및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게임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
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
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게임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
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게임이용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게임의 날) 국민의 게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게임의 날로 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1절 게임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의 다양성 증진
4. 게임창작활동의 활성화
5. 게임 관련 기술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6. 전문인력의 양성
7.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과 균형 발전
8.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이용자 보호
10.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게임사업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게임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게임산업진흥의 기반 조성

제15조(게임제작 등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게임이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게임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의 기술적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복구
2. 게임 및 게임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 게임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 또는 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 및 지원하거나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① 정부는 게임 관련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기술 수준의 조사
3. 미래 성장유망한 게임 관련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4. 게임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5.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6. 게임기술 연구 지원
7. 게임기술의 상용화
8.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9. 그 밖에 게임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표준화의 추진) ① 정부는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게임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게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게임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게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게임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게임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게임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게임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산업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게임산업진흥단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게임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협회등의 설립) ① 게임사업자는 게임에 관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등급분류

제1절 총칙

제27조(게임의 등급분류) ①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이하 “게임제작업자등”이

라 한다)는 해당 게임을 배급하기 전에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게임 위원회(이하 “게임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방식도 포함한다)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
·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
2.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배급하는 게임
3.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하는 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 다만,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은 제외한다.
 - 가.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
 - 나.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
4. 게임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게임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게임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 표시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③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의 등급분류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결정, 자료 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 및 게임내용 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 등급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

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게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심의를 할 수 있다.

⑧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이 제1항 각호의 게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게임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제28조(등급분류절차의 간소화) ①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게임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과 성인게임시설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는 등급분류시스템에 해당 게임의 주요 내용 및 등급 관련 자료, 등급분류 결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게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7조제5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게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경우 이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게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관련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등급분류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을 할 것
2.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을 것
3.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게임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4.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0조(내용수정의 신고 등) 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방식도 포함한다)을 수

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게임내용정보를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게임이 제공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또는 온라인플랫폼(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 제공에 이용되는 게임 제공사이트,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게임시설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게임의 외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게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게임이 그 내용수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등급분류(게임내용정보를 포함한다)가 변경되거나 제31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게임제작업자등에게 해당 게임이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위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게임제작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등급 재분류가 있을 때까지 내용이 수정된 게임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급, 제공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게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분류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⑥ 게임제작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임위원회에 등급 재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게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1. 게임제작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급 재분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게임이 등급분류 받는 내용과 다르게 배급 또는 제공되는 경우

⑧ 게임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게임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임제작업자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내용이 수정된 게임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급, 제공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정된 내용이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내용수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수정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등) ① 게임위원회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3.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 ② 게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

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환전 등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게임위원회는 제3항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직권재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게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게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처분의 이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지 등) 게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 협회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등급재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결정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수탁기관으로부터 제55조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절 게임위원회

제34조(게임위원회의 설립) 게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며 올바른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게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법률·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7조(감사)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8조(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

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게임산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5. 미성년자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9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법령이나 정관,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위원회 위원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촉을 건의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0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게임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기준 수립·지원
2.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3.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4. 게임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이를 위한 사후관리센터, 지역사무소 운영
5. 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연구
6.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이용자·관련 사업자·관련 공무원 대상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교육
7. 온라인게임제공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 또는 이와 관련된 광고·선전물 등이 제79조제5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제79조제6항 및 제7항의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8.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국제교류협력

9.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수탁기관”라 한다)의 관리

10. 그 밖에 등급분류 및 게임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당사자,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소관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제40조제4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 내에 사후관리센터를 둔다.

④ 사무국의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사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5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자체등급분류

제46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자체등급분류업무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

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7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해당하거나 게임시설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한다.

1. 게임을 제공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50조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7조제5항에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51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10.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제46조제3항제1호의 게임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1.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사업자가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을 새로운 게임으로 간주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조치를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중개계약사업자의 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하거나, 새로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4호에 따른 청소년의 기준 연령과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제49조(해외 게임의 이용제공)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이하 “해외 게임”이라 한다)을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해당하거나 게임시설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의 국내 이용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을 등급분류 할 것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이용자가 해외 게임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0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업무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46조제2항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3. 제47조제1항제9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제51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이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등급 변경, 취소 또는 서비스 중단 등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제27조제5항에 따른 정한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등급조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조정요구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절 등급분류수탁기관

제54조(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게임 관련 전문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2. 제30조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3.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직권 등급분류 결정 및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
7.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내용수정신고 수리 및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권 등급분류 결정 및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 등이 제27조제5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를 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관정을 받은 등급분류수탁 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5조(등급분류수탁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3. 게임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4.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제56조(등급분류수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54조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 제5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장 게임사업

제1절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제57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이하, “게임제작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중 어느 한 사업의 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나머지 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 및 변경등록

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제작업등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처분,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9조(표시의무) ①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이하 “게임제작업자등”이라 한다)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 및 그 광고·선전물마다 게임제작업자등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작업자 등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용자 연령을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② 게임제작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대하여 게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범위, 방법 등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게임정보 통합전산망) ① 위원회는 제59조제2항에 따른 게임의 운영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게임정보 통합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59조제2항에 따른 게임을 제공하는 자는 게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통해 게임 이용금액, 획득점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 운영정보(이하 “운영정보”라 한다)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제1항에 따른 게임관리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게임정보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운영정보의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게임제공업

제61조(게임제공업의 허가 등) ① 성인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8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 기준, 허가·변경허가,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허가증, 등록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1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처분,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처분,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고 있는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절 게임사업의 운영 등

제63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4.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된 유형·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換錢), 환전의 알선 또는 재매입을 하지 아니할 것

5.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성인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7. 선정성 및 사행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이하,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를 설치·실행할 것. 다만,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선정성 및 사행성이 예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게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0.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64조(경품의 제공) ① 온라인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제외한다)는 이용자 유치·홍보 등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품,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제공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게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게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게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66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시설이나 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6조(영업의 폐업 등) ① 게임사업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57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광고·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다만, 게임제작업자등이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급표시를 등급기준과 달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게임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내용정보 외에 제64조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5. 제63조제4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의 환전 등 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6. 제68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게임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7.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②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게임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게임을 제27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가 거부 또는 취소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

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6.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7.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내용 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범위 등을 위반하여 표시한 게임 및 게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8.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9.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10. 게임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1. 제10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2.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3. 게임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신체접촉 없이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기기·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배급,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행위

14.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게임정보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게임 운영정보의 전송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한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 배급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준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장 게임이용자 보호

제69조(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3. 유해한 게임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 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0조(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등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등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게임사업자는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온라인게임제공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의 게임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제외한다)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 이용방법, 게임 이용시간 등 제한
4.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시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 이용내역의 고지
5.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2조(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①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게임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게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3조(자율규제) ①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 행동강령에는 자율규제 내용, 자율규제 준수 사항,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72조제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75조(사후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게임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등급분류수탁기관 및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사업의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기기, 기구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게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2. 게임의 사행성 조장 방지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작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57조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6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68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제6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61조제6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61조제10항에 따른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61조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6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 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제63조제8호, 제10호, 제68조 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57조제7항 또는 제61조제10항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

추지 아니한 때

2. 제63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2. 게임장의 유해환경 개선

3. 불법게임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4. 압수된 불법게임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처분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폐쇄조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제79조(수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게임사업자에게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이하 이 항에서 “수거 등”이라 한다)하도록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2. 시험용 게임으로서 제27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
3. 제3조제1항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
4. 제2조제7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
5. 제57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
6. 제67조를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선전물
7. 게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8. 제68조제13호를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둔 게임진

행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당 게임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게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거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게임제공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9조를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내용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범위 등을 위반하여 표시한 게임 및 게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3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 조장 등을 하거나, 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통되거나 제공되는 게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등에 의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게임사업자 등에게 해당 게임에 대한 내용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80조(이행강제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게임사업자에게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5조제2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

고 전에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82조(분쟁 조정) ①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제공에 있어서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게임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이용과 관련한 게임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3조(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3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68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5조(청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직권취소
3. 제56조에 따른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지정취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54조 및 제8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수탁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7조에 따라 게임제작업등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61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7조제7항에 따라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용 게임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30조제6항에 따라 게임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6. 제30조에 따른 게임의 내용수정을 신고하는 자

③ 등급분류수탁기관에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수탁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2호·제4호를 위반한 자
2.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자
3. 제68조제1항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7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2.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3. 제52조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 또는 제6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59조 및 제6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 또는 게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6. 제60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하여 게임관리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게임 운영정보의 전송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한 자
 7. 제63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한 자
 8. 제6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자
 9. 제6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10. 제6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자

11. 제71조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7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13.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4. 제7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게임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자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1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27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
4. 제6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게임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8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신체 접촉없이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기기·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배급,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한 자
6.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7. 제7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3조제6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3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인게임시설제공사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영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29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7조를 위반한 자
 5.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을 제공한 자
 6. 제7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7.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 2 제63조제7호를 위반하여 프로그램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71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수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3조제1호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6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게임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게임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의를 게임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게임위원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게임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정관 변경 인가 등에 관한 특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 등은 이 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등으로 본다.